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5.12.1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1. 21.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나. 운용방침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임
-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운영부서 : 각 기금관리운용 관·과·소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4.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5년도 조성액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합계	67,229,461	6,677,766	38,532,199	35,375,028	△31,854,433
총무위원회 소관	62,399,706	5,848,161	37,524,599	30,723,268	△31,676,438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4,305,779	1,256,089	32,410,959	23,150,909	△31,154,870
고향사랑 기금	984,552	402,186	130,040	1,256,698	272,146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0	4,030,000	4,030,000	0	0

기금명	2025년도 말 조성액 (a)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식품진흥 기금	134,971	49,350	49,000	135,321	350
중소기업 육성기금	3,814,518	22,750	800,000	3,037,268	△777,250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536,811	11,447	10,000	538,258	1,447
사회복지 기금	2,623,075	76,339	94,600	2,604,814	△18,26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829,755	829,605	1,007,600	4,651,760	△177,995
재난관리 기금	3,322,264	768,000	953,000	3,137,264	△185,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372,826	29,268	34,600	367,494	△5,332
체육진흥 기금	1,134,665	32,337	20,000	1,147,002	12,337

○ 2026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318억 5,443만 3천원이 감액(△47.38%)된 353억 7,50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 일반회계 전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1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14억원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총무위 소관

(단위 : 천원)

구분	기 금 명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수 입 계 획	합 계	68,247,867	4,030,000	43,200	62,399,706	1,376,606	398,35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5,561,868			54,305,779	1,256,089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4,030,000	4,030,000				
	고향사랑 기 금	1,386,738			984,552	15,831	386,355
	식품진흥 기 금	184,321		43,200	134,971	4,150	2,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3,837,268			3,814,518	22,750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548,258			536,811	11,447	
	사회복지 기 금	2,699,414			2,623,075	66,339	10,000

구분	기 금 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수금 원금상환	전출금	기타 지출
지 출 계 획	합 계	68,247,867	5,043,440	50,000	30,723,268	2,410,959	30,000,000	20,2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5,561,868			23,150,909	2,410,959	30,000,000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4,030,000	4,030,000					
	고향사랑 기 금	1,386,738	110,040		1,256,698			20,000
	식품진흥 기 금	184,321	48,800		135,321			200
	중소기업 육성기금	3,837,268	800,000		3,037,268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548,258	10,000		538,258			
	사회복지 기 금	2,699,414	44,600	50,000	2,604,814			

5. 검토의견

- 202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총 수입 및 지출액은 모두 68,247,867천원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예치금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자산 운용 수익 또는 적립금으로 보임.
- 전입금은 거창군 화장시설 주민지원기금에서 전액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된 금액임.
- 이자수입은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서 발생하여 기금의 운용 수익이 일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체 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과 지출이 모두 55,561,868천원임.
- 거창군 화장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2026년부터 만들어지는 기금으로, 전입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지출 계획임.
- 고향사랑기금은 이자수입과 예치금이 주요 수입원이며, 종합 사회복지센터 노후 기자재 교체 사업(30,000천원), 영유아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50,000천원),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 운영(30,040천원) 등 비용자성 사업에 110,040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타 지출(20,000천원)이 있음.
- 지출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원금 상환과 예치금이 전체 지출의 약 89%를 차지하며, 이는 기금이 직접적인 사업비보다는 자산 운용과 채무 상환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비융자성 사업비는 주로 거창군 화장시설 주민지원기금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임.
- 융자성 사업비는 사회복지기금에서만 소액 집행될 예정임.

* 지출분석

항 목	금 액(천원)	비 율(%)
비융자성 사업비	5,043,440	7.4
융자성 사업비	50,000	0.07
예 치 금	30,723,268	45.0
예 수 금	2,410,959	3.5
원금상환	30,000,000	43.9
전 출 금	0	0
기타지출	20,200	0.03

6. 결론

- 대부분의 기금이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이라 판단됨.
- 전체 지출 중 직접적인 사업비(비융자성, 융자성)는 약 7.5%에 불과하여, 기금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환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금이나 아림예술진흥기금은 지역 정체성과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검토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 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 · 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 ·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점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

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지원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지원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제6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 지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5.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양성평등 관련 단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지원은 제외한다.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란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그 밖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창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③ 자활계정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

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장: 5천만원

나. 개인: 2천만원

2. 융자금 대부이율: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양성평등계정

3. 자활계정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의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노인 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

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아림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아림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림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림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 · 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의 출연금
4.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림예술제 행사
2. 그 밖의 아림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8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